

2021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2022. 2.

상주시 옴부즈맨



2021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2022. 2.

상주시 옴부즈맨

보고서를 발간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이 어언 5년이 지나기까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덕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접촉이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사람의 민원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온 지난 1년 동안의 노력과 활동들을 「2021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며 지낸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맨 과도 소통을 확대한 지난 한해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지만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초심으로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2. 2.

상주시 옴부즈맨 이 범 용

목 차

▣ 음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음부즈맨 운영 현황	3
1. 도입 배경 / 3	
2. 설치 및 운영 근거 / 4	
3. 추진 경과 / 4	
4. 음부즈맨 운영방법 / 4	
5. 구성 현황 / 5	
6. 주요 기능 및 직무 / 6	
II. 음부즈맨 운영 성과	9
1. 개요 / 9	
2. 고충민원 처리 유형 / 9	
3.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10	
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 12	
5. 고충민원 처리 세부 사례 / 16	

▣ 제도 홍보

1. 음부즈맨 활동	77
2. 음부즈맨제도 홍보	80

▣ 부 록

1. 상주시 음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9
2. 상주시 음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5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99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 현황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주요기능 및 직무

II. 옴부즈맨 운영 성과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고충민원 처리사례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가. 지방자치시대의 신뢰받는 행정구현 일환

-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임
- 옴부즈맨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등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상주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0.02)하여 상주시 옴부즈맨을 위촉(2016.7.11)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상주시 옴부즈맨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중앙정부의 설치 권장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충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맨)의 설치·운영을 권장

2.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추진 경과

- 2015. 10. 27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공포(의원입법)
- 2016. 02. 29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6. 07. 11 제1대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강석도)
- 2016. 07. 18 상주시 옴부즈맨 직무수행 개시
- 2016. 08. 01 상주시 옴부즈맨 현판식 (상주시청 1층, 민원토지과 입구)
- 2018. 01. 01 옴부즈맨 지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사호동)
- 2018. 07. 10 제2대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강석도)
- 2019. 01. 02 상주시 옴부즈맨 사무실 이전(시청 본관 1층 → 3층)
- 2020. 02. 27 제8회 국민권익의날 국민권익위원장 표창(강석도)
- 2020. 06. 15 제3대 상주시 옴부즈맨 공개모집
- 2020. 09. 18 제3대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이범용)
- 2021. 03. 18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서울)
- 2021. 09. 28 옴부즈맨운영 활성화 세미나 참석(울산)
- 2021. 12. 01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2차 정례회 참석(세종)

4. 옴부즈맨 운영방법

가. 고충민원 신청·접수

-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고충민원은 서면으로 신청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등을 기재

나. 조사여부 결정

- 접수된 고충민원은 각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하 처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이첩(단순 민원도 관련부서로 이첩처리)

다. 조사실시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

라. 조사결과 통보

- 고충민원 처리는 합의나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

5. 구성 현황

가. 구성 및 지위

- 지 위 : 상주시 소속으로 직무수행관련 독립성 보장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방식 : 공개 모집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
- 위 촉 일 : 2020. 09. 18
- 상주시 옴부즈맨

옴부즈맨	주요경력	위촉기간
이 범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상주시의회 사무국장•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 영덕부군수, 칠곡부군수	2020.9.21~ 2022.9.20

나. 자격 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주요 기능 및 직무

가. 직무 관할 범위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나. 직무 및 권한

-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다.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
-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하려는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맨 특성인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辦)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 수행

라. 주요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 (조례 제15조)

-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상주시 및 수임·수탁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시 또는 수임·수탁 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의 의뢰도 할 수 있음
-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장(이하 “단체장”이라한다)은 옴부즈맨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조례 제18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조례 제19조)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과정에서 조례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조례 제25조)

- 옴부즈맨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

○ 운영상황의 보고 공표(조례 제26조)

-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마. 처리 제외 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II

옴부즈맨 운영 성과

1. 개 요

가. 관련근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운영시간

- 주 5회 운영(월~ 금요일) 10:00 ~ 16:00

※ 년도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 2021년(66건) • 2020년(72건) • 2019년(65건)
- 2018년(62건) • 2017년(54건) • 2016년(38건)

다. 운영장소 : 옴부즈맨 사무실(시 본청 3층)

라. 지원인력 : 1명

2. 고충민원 처리 유형

가. 시정 권고 : 조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의견 표명 : 조사 결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정·중재 : 옴부즈맨의 권고 이전 옴부즈맨의 중재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

라. 기각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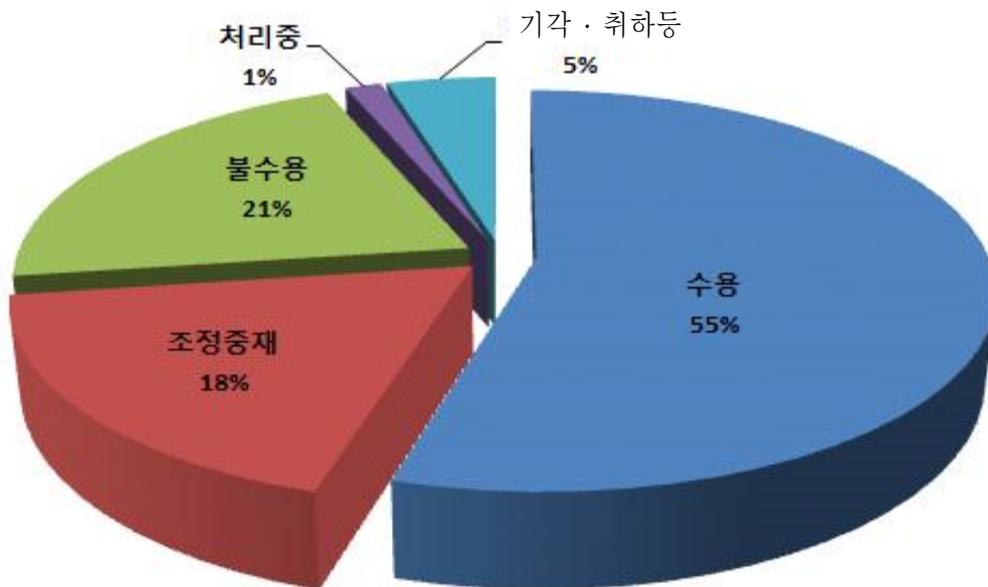
마. 취하 : 옴부즈맨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

바. 조사 제외 : 사실관계 검토 결과, 조례에 따라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3.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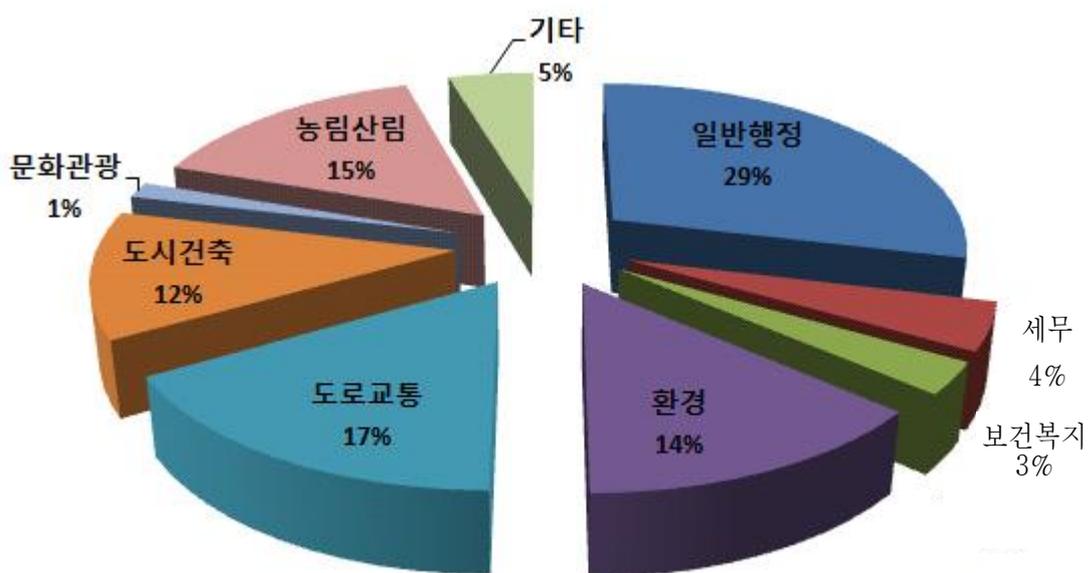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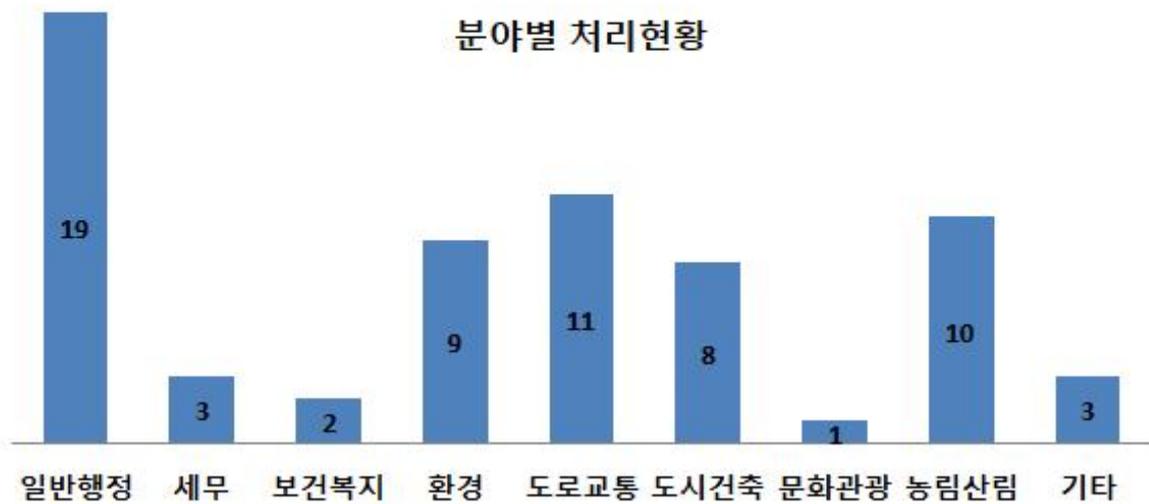
■ 고충민원 처리현황

접수 건수	유형별 처리 현황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조정 중재	기각 취하등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처리중		
66건	51	36(7)	14	1	12	3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계	일반행정	세무	보건복지	환경	도로교통	도시건축	문화관광	농림산림	기타
66건	19	3	2	9	11	8	1	10	3



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고충민원 접수 · 처리내역

연 번	민 원 내 용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1	견사(犬舍)의 양성화 철회와 오폐수관로 이설요구	건축과 환경관리과	수용	
2	남산근린공원의 자연녹지지역 해제요청	도시과	불수용	
3	농경지 침수 방지대책 요청	도시과	수용	
4	귀농·귀촌 주거임대료 지원요건 개선	농업정책과	수용	
5	저지대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요청	건설과	수용	
6	마을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요청	개발지원과	불수용	
7	구거를 활용한 농로포장 요청	개발지원과 남원동	수용	
8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요청	건설과	수용	
9	주택건설과 관련한 기존 배수로이용 승인요청	환경관리과	수용	
10	채굴지 진입로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 면제 요청	산림녹지과	불수용	
11	윗집 낙숫물 피해와 경계침범 건축물 해결요청	동문동	조정중재	
12	택지개발로 인한 피해방지 요청	건축과 산림녹지과	조정중재	
13	점용중인 토지(국유지)의 불하요청	회계과	불수용	
14	마을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철도부지의 포장요청	북문동 철도공단	일부수용	
15	노퍽이 좁아 위험한 농로 포장폭 확장요청	개발지원과 공검면	수용	
16	국·공유재산의 실 점용권자 확인 요청	건설과 동성동	불수용	

연번	민원내용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17	낙단교 휴양단지 도로변토지의 효율성제고 요청	건설과	조정중재	
18	인감증명서 발급시 지문날인이 꼭 필요한가	민원토지과	수용	
19	민원인 소유 토지상의 불법건축물 조치요구	건축과 낙동면	일부수용	
20	자력으로 포장한 농로의 원상복구 철회요청	건설과 함창읍	일부수용	
21	경천섬 관광지에 시계탑 설치 협조요청	관광진흥과 국토관리청	수용	
22	경계선 분쟁으로 인한 대체농로 개설방법 요청	민원토지과	조정중재	
23	비현실적 점용료 부과의 시정·개선요구	건설과 이안면	수용	
24	수해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요구	산림녹지과 남원동	조정중재	
25	마을안길의 배수로 설치 요청	동문동	수용	
26	폐교부지내의 거주지 불하요청	농업정책과 회계과	수용	
27	이장(里長)의 활동에 대한 불만과 마을불화 진정	기재생략	조정중재	
28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도시과	일부수용	
29	비포장 통행로의 불편해소 요청	화동면	수용	
30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의 부당운영 시정요구	기재생략	수용	
31	보조금의 자부담분 인하 조정요구	문화예술과	수용	
32	농지전용에 대한 고발조치 구제요청	화북면	불수용	
33	상수도설치 후 지하수이용 불편해소 요청	상하수도 사업소	불수용	
34	공용주차장내의 대형 피해목 제거 요청	안전재난과 동문동	수용	
35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경제기업과	수용	
36	진입로 멸실로 맹지가 된 경작지의 대책요구	신흥동	불수용	

연번	민원내용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37	잡석투척으로 인한 장비파손 및 현장복구 요청	동성동	수용	
38	공중화장실의 공용화 관리요청	환경관리과 동성동	수용	
39	양식장관련 판매시설의 건축신고 수리요망	민원토지과 건축과	수용	
40	귀촌에 따른 정착애로사항 지원요청	농업정책과	일부수용	
41	상가 냉방기 실외기와 환풍기로 인한 피해방지	건축과	조정중재	
42	학교부지로 착오 이전된 토지의 반환요구	농업정책과	불수용	
43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언행주의 촉구	건축과	조정중재	
44	하수관로 매설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대책	도시과	일부수용	
45	공사장의 각종 체불대금 해결요청	민원토지과	수용	
46	축사 그늘로 인한 농작물피해 조치요청	건축과	조정중재	
47	관리부실한 축사악취와 불법건축물 조치요구	환경관리과 건축과	수용	
48	인접주택에 피해가 우려되는 택지조성에 대한 이의	민원토지과 건축과	일부수용	
49	마을출입에 지장 있는 도로변화단 제거요청	도시과	불수용	
50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기한 연장 요구	교통 에너지과	불수용	
51	농로로 이용할수 있도록 도로개설 요청	개발지원과 합창읍	수용	
52	도로변 감나무의 소유권 확인요청	건설과	조정중재	
53	영농조합의 부실운영 지도요청	기재생략	조정중재	
54	구거부지에 배수로설치 사용승낙 요청	민원토지과 건설과	수용	
55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명의를 대한 이의	건축과 중동면	불수용	

연 번	민 원 내 용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56	경지정리후 환지받은 토지의 실소유자 확인요청	건설과 농어촌공사	조정중재	
57	축사관리의 지도감독 요구	환경관리과	수용	
58	사유지 매립장에 대한 건축지원이나 보상요청	환경관리과	불수용	
59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상하수도 사업소	수용	
60	상수도누수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상하수도 사업소	불수용	
61	마을상수도 폐쇄에 따른 수도 급수요청	상하수도 사업소	처리중	
62	공공사업편입물건 보상금지급에 대한 이의	산림녹지과	수용	
63	도로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보상절차 불만	건설과	수용	

■ 기각 · 취하 고충민원

연 번	민 원 내 용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1	시유지 불하요청	건설과	취하	
2	임산물재배지까지 진출입로 포장건의	화동면	기각	
3	과거 측량자료를 인용한 지적공부 정리요청	민원토지과	기각	

5. 고충민원 처리 세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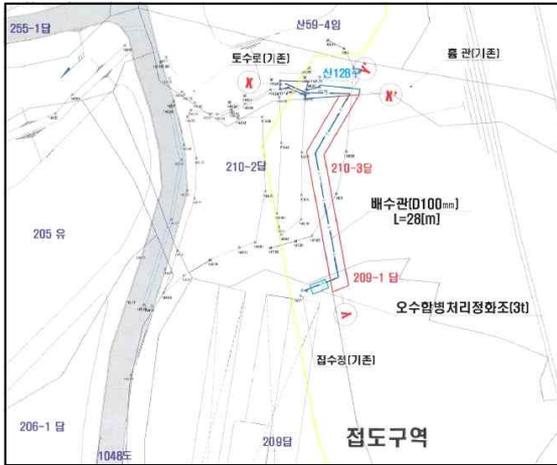
1 견사(犬舍)의 양성화 철회와 오폐수관로 이설요구

민원 요지

- 낙동면 신오리 〇〇〇번지의 축사(견사)로 인한 악취와 소음은 물론 오폐수 배수관로가 민원인의 동의도 없이 인접한 민원인의 토지를 지나도록 임의로 매설하였는바 이에 대한 시정과, 수년전부터 개사육장의 불법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여러 차례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0. 12월에 축사관련 시설들을 양성화시켜 주었는바 관리사의 경우 실제 오폐수관로가 없는데도 잘못 표기된 설계도면을 보고 양성화한 조치로 간주되는바 오폐수처리 관로도 없는 관리사의 양성화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주장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 낙동면 신오리 〇〇〇번지에는 48평 정도의 견사 2동에 1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2020.12월에 양성화 조치된 관리사, 사료창고, 약품창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
-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의 토지에 매설한 오폐수 배수관로의 이설을 위해 민원인 토지를 우회하는 배수관로 설치계획을 세우고 '21.3.22 상주시(환경관리과)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새 배수관로 설치는 오폐수의 확실한 정화를 위한 상주시의 권고에 따라 3톤 규모의 오수합병처리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배수관로의 민원인 토지 우회매설에 따른 토지소유자(경상북도, 건설교통부)의 사용승낙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음
- 지난해 말 양성화된 관리사 등 부대건물은 2019년 과태료(△△△△천원) 부과와 무허가 건축물 적법화 과정을 거쳐 2020.12.29일 적법화된 건축물로써, 민원인이 제기하는 관리사의 배수관로 유무는 설계도면상 표기의 오해이며 관리사의 오폐수는 부대건물과 견사를 지나는 기존의 배수관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민원인도 이를 이해하였음



공사계획 평면도



현황도

2 남산근린공원의 자연녹지지역 해제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신봉동○○○-○, ○번지는 20여년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600평 중 도로에 편입되고 340평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2020.7.1부로 남산 공원부지는 도시계획 일몰제로 해제되었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물신축 등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의 해제를 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도시과
- 민원인의 토지 신봉동 ○○○-○(전 895㎡)과 ○○○-○(전 237㎡)을 포함하여 남산 공원을 중심으로 612,900㎡가 1975년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시 건폐율 20%가 적용되는 등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바, 자연녹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권한으로 시설계획이나 환경·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당장 해제조치는 곤란함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안내

3 농경지 침수 방지대책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신봉동 △△자동차 정비사업소 맞은편에 위치한 민원인의 토지(신봉동 000-0) 출입로가 도로보다 낮아 지대가 높은 라이온스탑 쪽에서부터 도로상의 물들이 모여 낮은쪽인 민원인 농지로 흘러들어 피해를 받고 있으니 농지 출입로(인도)를 도로보다 높혀 침수피해를 막는 대책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도시과
- 현장 여건상 우수기때는 지대가 높은 라이온스탑 쪽에서 민원인 토지쪽으로 많은 양의 물이 모여 경작지 출입로를 통해 흘러 드는 관계로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농지 출입로가 오히려 침수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임
- 현장상황에 맞춰 낮게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경작지로의 출입로를 높여 도로상의 우수물이 경작지로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이용에도 편리하도록 조치



물쏟림 현황도



물막이턱 설치 전후

4 귀농·귀촌 주거임대료 지원요건 개선

민원 요지

- □□면에 귀농한 민원인은 상주시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주거임대료 지원을 받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시청과 □□면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한바 임대주택 소유주의 사망 후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 후일 소유권 분쟁의 발생 우려가 있어 임대주택 상속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명의 상속대상자 동의를 임차인이 직접 다니면서 받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이의 개선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농업정책과
-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많이 변동되는 연말 년초에 민원신청을 하여 다소 번거롭고 불편을 받은것 같으나, 귀농귀촌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에 있어 정확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아직 상속이 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는 추후에 상속대상자간의 분쟁소지가 있어 임대주택의 상속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으나
- 민원인의 경우 흩어져 살고 있는 상속대상자 모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속대상자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지역거주 상속대상자가 책임있게 확인하고 동의하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조치함으로써 해결

5 저지대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영남제일로 큰 도로변에 위치한 민원인 소유의 복룡동 ○○○-○○번지는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 우수기에는 도로의 빗물들이 모여 민원인 소유의 부지로 쓸리는 바람에 민원인 부지는 질퍽거리기 일쑤이며, 우수기엔 침수되다시피 하고 있는바 도로의 물들이 민원인 부지로 쓸려들지 않도록 조치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 도로의 높은 쪽에서부터 흘러 내리는 빗물들이 민원인의 토지인 복룡동 〇〇〇-〇〇번지로 쓸려들지 못하도록 도로 가장자리와 민원인 토지의 경계에 아스콘으로 물막이 경계턱을 만들어서 조치

6 마을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 소유의 사별국면 용담리 〇〇〇-〇(대, 661㎡)번지 중 49평 정도가 오래전부터 마을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최근 인접한 용담리 마을도로 개선공사를 하면서 과거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모두 보상을 받았는바 민원인의 편입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개발지원과
- 마을도로나 농로와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들이 과거에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보상 없이 소유주의 사용승낙만으로 확장이나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정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다른 수많은 미보상 토지와 의 형평성문제로 곤란
- 민원인이 제기했듯이 최근에는 마을도로나 농로와 같이 공공용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한후 소유권 이전과 함께 공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도 과거 마을도로 편입지에 대한 확장공사나 수용이 필요할 때 보상할 것임을 설명하고 이해시킴

7 구거를 활용한 농로포장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연원동 〇〇〇번지(답)와 산 〇〇〇번지 사이에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가 있는바 본 토지의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 농로로 잘 이용되고 있으나 양 지면 사이의 구거농로는 비포장으로 영농 이용에 불편하니 양 지면사이의 미포장 된 구거농로 100여m정도를 포장하여 줄 것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개발지원과, 남원동
- 남원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폭 3m의 구거 90m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본청(개발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포장함으로써 농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8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요청

민원 요지

- 상주에서 외남면으로 가는 도로변의 개운동 〇〇〇-〇번지 토지는 약간 경사진 지대의 낮은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윗집의 생활용수나 우숫물들이 민원인 토지로 흘러 내려 민원인 토지는 항상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상황인바 윗집에서 받은 물들을 배수시킬 수 있는 조치를 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와 조치방법을 검토하여 민원인 윗집의 아래쪽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윗집의 생활용수나 우숫물들이 집수정으로 모이게 한 후 도로를 횡단하는 지름 30cm의 배수관로를 지하에 매설하여 도로 건너편의 소하천으로 배수시킴으로써 민원 해결



도로횡단 배수관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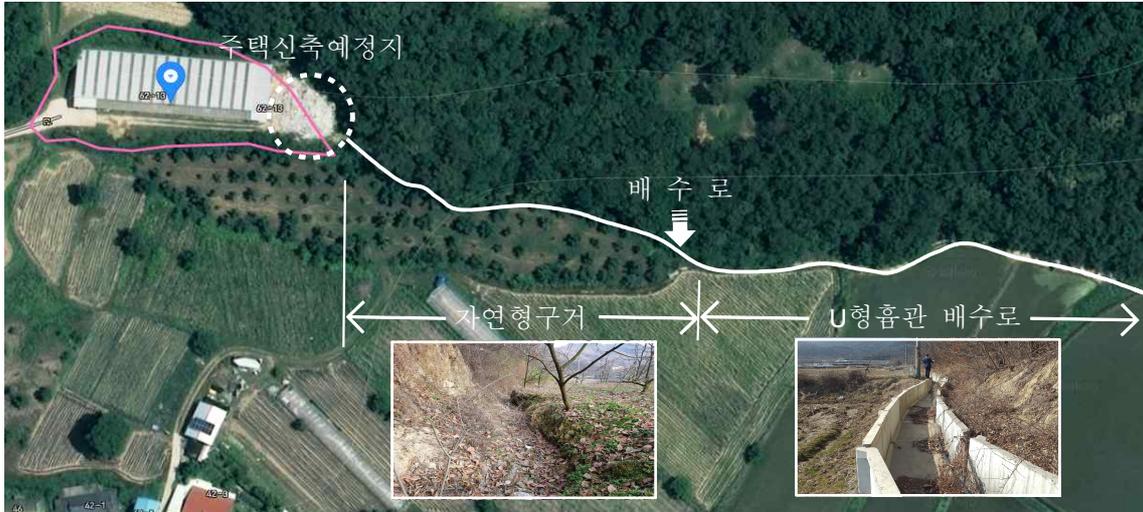
9 주택건립과 관련한 기존 배수로이용 승인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외서면 봉강리 000번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던 중 2년전쯤 화재로 주택을 소실한 후 그 자리에 다시 25평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려 하니 예전부터 하수도로 이용해 오던 주택 아랫쪽의 자연형 구거와 U형 홈관구거가 지나는 토지 소유주의 배수로 사용 승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바 민원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 같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환경관리과
- 민원인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생활오폐수를 처리할 배수로라도 배수호가 지나는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우려하여 관련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던바
- 민원인의 입장과 동의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감안하여 예전부터 형성되어 사용해 오던 주택 신축지로부터 100m정도의 자연형 구거는 구거가 위치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그 이후 250m정도의 U형홈관 배수로는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공용으로 설치한 만큼 동의를 생략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민원인 또한 이러한 중재를 흔쾌히 수락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취하기로 함



배수로 이용 현황도

10 채굴지 진입로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 면제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이안면 안용리 산 〇〇〇번지에 광석채굴을 위한 허가신청 과정에서 채굴장까지 진입로가 통과하는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바, 해당 토지 2필지 중 한필지는 국(산림청) 소유로 채굴 허가시 승낙이 된다고 했지만 다른 한필지는 종종소유로써 공부상 소유주나 문중을 찾아 관리자를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기에 과거에 광산 진출입로로 사용했던 출입로를 소유주 승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산림녹지과
- 광물 채굴을 위한 진출입로는 산주(山主)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바 민원인의 경우 문중소유로 되어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50여년전 인근의 광산채굴시 사용하던 진출입로의 흔적이 있는 만큼 이를 산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나
- 과거의 진출입로는 광산채굴 종료와 함께 복구가 된 상태이며 민원인의 광물채굴을 위한 진출입로는 산지조성 관련법에 따라 새로이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결과도 동의를 필요하다고 회신되었으며, 문중소유로 관리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재산관리인을 찾아주어 동의를 구하도록 조치

11 윗집 낙숫물 피해와 경계침범 건축물 해결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동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윗집의 감타래 건물 지붕의 낙숫물들이 민원인 집으로 떨어지는 관계로 지난해 우수기에는 민원인의 집이 물에 잠기다 시피 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감타래 건축물도 민원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 같아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웃간의 감정만 나빠졌을 뿐 해결되지 않아 이의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동문동
-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보다 높은 지대의 윗집 감타래 건물은 물받이가 없어 우수기에는 많은 양의 빗물들이 민원인 집으로 떨어지는 관계로 피해가 있는바 윗집을 이해시켜 감타래 건물의 지붕에 물받이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 감타래 건물의 민원인 쪽으로 경계 침범여부는 측량으로서만 정확히 알 수가 있는바 이웃인 아래·윗집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서로 이해하며 지내는 것으로 조정중재



경계침범 주장 부분



물받이 설치

12 택지개발로 인한 피해방지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개운동 〇〇〇-〇〇외 주변 일대는 수년전부터 주택을 건립코자 3m이상의 옹벽을 쌓고 산지를 개발하여 택지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옹벽 바로 아래쪽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위쪽 택지 조성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들과 옹벽에서 짚어 나오는 습기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택지조성자와 대책을 협의 할려 해도 연결도 안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산림녹지과
- 개운동 〇〇〇-〇〇번지 일대는 2017년도부터 산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중인 곳으로 택지조성은 마무리 단계로 개별분양이 되었으나 주택건립은 1동만 되어있는 상태임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분양은 이뤄졌기에 당초 개발행위자에게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알려주고 조치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이 요청한 택지조성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신청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인근주택의 피해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을 우선 세우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피해해소에 적극 노력



현 황 도



택지개발로 인한 피해주택

13 점용중인 토지(국유지)의 불하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〇〇〇-〇〇번지의 국유지 400여평을 50여년전 부터 점용료를 내고 농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을 불하 받고자 하는데 불하 가능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회계과
-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서면 관동리 〇〇〇-〇〇번지는 외서천 하천 개수공사 후 2307m²(697평)의 국(농수산부, 구거)소유의 제내지로 이중 1345m²(406평)를 민원인의 부친 때부터 점·사용을 해오다 37년 전부터는 민원인 명의로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임
- 불하절차는 상주시에서 본 토지의 용도폐지를 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처분을 의뢰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방법을 검토하여 공개매각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게 되는데 본 토지의 경우는 공개매각 대상이라는 답변에 따라 민원인에게 이러한 설명과 함께 현 상태대로 사용 하는게 민원인에게 최선의 방법이며 추후 수의계약 조건이 갖추어지면 불하 받을 것을 안내

14 마을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철도부지의 포장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동은 경북선 철도가 지나가는 마을로써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진입도로 중 30여m가 철도부지여서 철도청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비포장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많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요즘 보기 드문 비포장 마을도로인 만큼 조속히 포장하여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북문동, 철도공단(충청본부)
- 경북선 철도가 통과하는 상주시 ○○동을 관장하는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재산지원처 및 안전혁신처)와 마을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동 ○○○-○(국, 국토교통부)번지의 국유지 포장사용을 협의한 결과 ○○동의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관리를 위한 철도부지 임에도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곳으로
- 철도관리 목적을 위한 토지에 목적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나 아스콘 등의 영구시설 행위는 불가하다는 회신에 비포장도로에 쇠석을 깔아 통행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의 조치



철도 부지



비포장구간

15 노폭이 좁아 위험한 농로포장폭 확장요청

민원 요지

- 공검면 오태리 〇〇〇〇-〇번지의 농로중 마을입구의 승강장에서 맞은편 저수지로 출입하는 약 100여m의 농로가 오래전에 폭 2.5m정도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어 좁은 포장 폭으로 인하여 차량출입에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으니 포장폭을 다소라도 넓혀 주변 경작자들의 출입이나 저수지를 이용하는데 사고위험을 줄여 주기를 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개발지원과, 공검면
- 해당 농로는 폭이 넓지 않아 예전에 약간의 노건만 남겨둔 채 포장하였지만 폭이 2.5m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형차량의 통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실정이라 민원인의 요청대로 농로 양쪽 노건을 최대한 포장한다면 50cm정도는 넓혀 질 수 있어 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 양쪽 노건 확장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와의 접합이 어려워 시간이 흐를수록 노건 포장부분이 침하되어 확장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농로옆의 U관 배수로 중 통행에 위험이 높은 곡선 부분 30여m에 대하여 U관 배수로를 복개하여 농로폭 확장 조치

16 국·공유재산의 실 점용권자 확인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서곡동 〇〇〇-〇〇과 인평동 〇〇〇-〇〇번지 두필지에 대한 정당한 점용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민원으로 본 토지는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 답으로 서로 접한 100여평의 텃밭형태의 농지로서 민원인의 제수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사고로 2015년경부터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2020년도에 민원인이 대신 농사를 짓고 2021년도에도 농사를 지으려는데 동네 〇〇〇씨가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았으면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동성동
- 상주시 서곡동 〇〇〇-〇〇(하천 170㎡)과 인평동 〇〇〇-〇〇(하천 161㎡) 두 필지는 연접한 국유재산으로 민원인의 제수에게 점용 허가되어 오던 중 사고로 2015년부터 관리를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서곡동 〇〇〇-〇〇번지는 2018년도에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의거 관리청이 국(건설부)에서 국(기획재정부)으로 직권 인계되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 당초 점용허가 받은 자가 2015년경부터 부재로 관리를 못하자 인근의 〇〇〇씨가 농사짓는 것을 민원인이 물리치고 제수를 대신하여 2020년도에 농사를 지었으나 〇〇〇씨가 2021년도에 토지 관리청인 동성동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권리주장을 하게 되었음
- 〇〇〇씨는 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동안 동 토지에 농사를 짓고 관리했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과 변상금까지 납부하고 허가를 받았으며, 민원인은 당초 허가 받은자가 7년 동안 점용료를 내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제수일 뿐이지 점용허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툼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설명하고 안내

17 낙단교 휴양단지 도로변토지의 효율성제고 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은 낙단교 휴양단지 도로변의 낙동면 낙동리 〇〇〇, 〇〇〇 등의 토지소유 주로써 휴양단지 조성시에는 농지가 도로보다 1~2m정도 많이 낮았으나 건물신축이나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와 접한 낮은 농지를 도로높이만큼 성토하면서 도로비탈면까지 성토를 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려다 보니 도로부지 무단점용으로 원상복구토록 조치되었는바 현장여건은 도로비탈면을 성토(매립)하지 않고서는 도로와 접한 민원인들의 토지이용이 곤란한 만큼 불법만 조치하려 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토지이용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 민원인은 도로보다 낮은 토지를 도로 높이만큼 1~2m 성토하면서 도로비탈면 부분도 성토(매립)하여 활용하여 왔던바 이는 상주시에서 토지로의 출입로부분을 제외한 여타 도로부지인 도로비탈면 부분의 점용을 불허한 관계로 부득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성토하여 사용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번에 민원발생으로 인해 무단 성토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되었던바 민원인은 무단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는 인정하면서도 추후라도 도로 비탈면부분의 점용허가를 해준다는 전제가 없으면 토지이용면이나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만큼 원상복구가 곤란하다고 맞서는 입장임
- 2021년 8월까지 5차에 걸친 상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민원인과 대립관계이던 것을 상주시와 민원인간의 조정을 거쳐 원상복구를 하되 수목이 식재된 무단 성토지역은 수목 이식기인 2021. 10월말까지, 다른 무단 성토지역은 복구할 토사량이 엄청난 만큼 토사이동이 원활한 동절기를 택하여 2022. 1월말까지 원상 복구키로 하고 원상복구지역의 추후 점용허가여부는 일단 불법행위 원상 복구후에 검토하기로 협의조정
- 민원이 제기된 지역 일대는 관광지와 연계 개발된 곳으로 도로개설 당시에는 주변 농지보다 도로가 많이 높게 개설된 관계로 그 후 개발과 함께 도로변의 낮은 토지에 성토를 하고 건축으로 상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도로측구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나 배수로 설치 등으로 도로와 연결토지와 단절이나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도로구역(비탈면)매립 사용현황



도로구역 무단매립사용과 복구광경

18 인감증명서 발급시 지문날인이 꼭 필요한가?

민원 요지

-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수령자의 지문을 찍으라고 하는데 지문을 꼭 찍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확인을 하였는데도 지문을 찍어야 한다면 이중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 확인과 함께 필요 조치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민원토지과
- 현행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의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인 경우에는 지문을 꼭 찍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임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발급) >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 (중략) ……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확인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지문 날인 요구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여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바, 일부 담당 공무원이 관례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인감업무담당부서에 시정을 요청하여 2021. 3. 24일 읍면동에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유의사항을 강조 시달

19 민원인 소유 토지상의 불법건축물 조치요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오랜 객지생활을 하다가 최근 고향에 내려와 보니 민원인의 토지인 낙동면 □□리 〇〇〇-〇(대, 306㎡)와 〇〇〇-〇(답, 516㎡) 두필지에 민원인이 승낙하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처리와 대책을 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낙동면
- 현장 확인 결과 낙동면 □□리 〇〇〇-〇번지는 1995년 민원인의 부친(〇〇〇)으로부터 민원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본 토지상의 주택(114.4㎡)과 축사(77.35㎡)는 50년 전쯤인 1973년에 준공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주는 당시 민원인의 부친은 돌아가시고 형제분들의 승낙을 받아 건축한 것으로 불법이나 무단 건축물이 아님을 주장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낙동면 □□리 〇〇〇-〇번지는 돌아가신 민원인의 부친(〇〇〇)명의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택(115.3㎡)과 10년전쯤 건립한 철골구조의 창고(50여평)가 있으나 주택은 민원인도 승낙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창고는 임의로 건축한 만큼 민원인이 관할 행정관서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면 조치 할 수 있음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안내



민원대상 건축물



불법 건축물(창고)

20 자력으로 포장한 농로의 원상복구 철회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은 함창읍 나한리 〇〇, 〇〇번지의 토지에 영농을 하면서 미포장된 국유 구거농로 50m 정도를 자력으로 포장하여 농지 출입으로 편리하게 사용 하던 중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수로(20여m)까지 포장을 하였다고 반발하며 불법포장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주시에서 원상복구해야 된다는데 이의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함창읍
-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은 영농편의를 위해 미포장된 구거지목의 농로를 사비(私費)를 들여 포장하면서 좁은 농로폭을 넓히고자 농로 옆 일부 사유지에 설치된 수로에 까지 덮개를 하여 3m정도 폭으로 포장하다보니 연접 수로소유주의 불만을 초래하여 고발 당하였으며, 포장한 농로는 구거(농림부)로써 구거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임의로 한것은 농어촌 정비법 제23조에 의한 무단점용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서 원상복구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 정확한 농로포장의 경계확인을 위해 함창읍에서 경계측량까지 하여 불법부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조치전 민원인과 신고인과의 원만한 갈등조정 기간을 가졌으나 무산되어 불법 포장농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였지만 농로포장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 추후 상주시에서 원상복구한 구거농로에 대하여 포장하기로 하였음



자력포장 농로와 수로포장부분



경계확인 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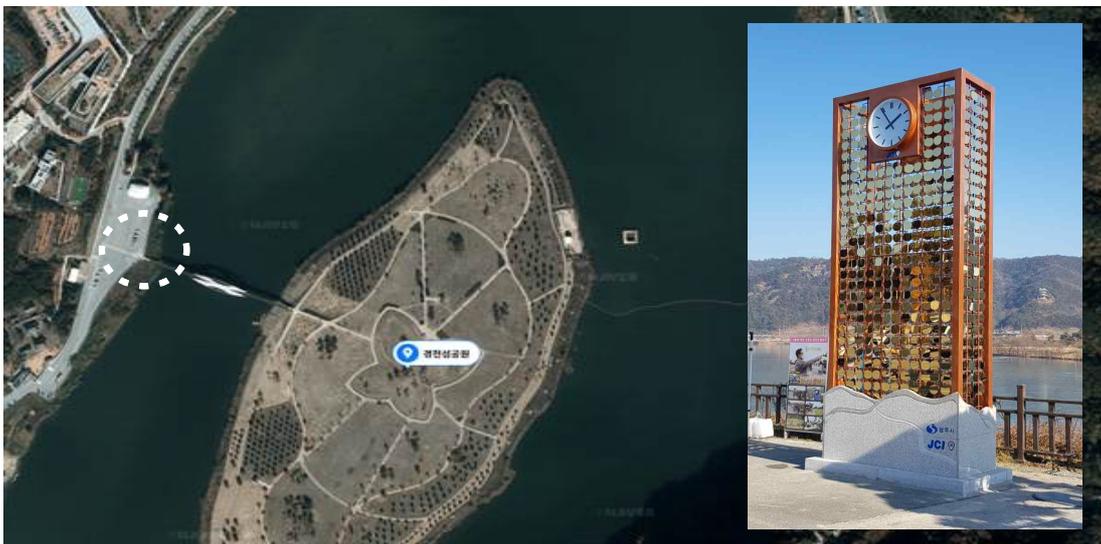
21 경천섬 관광지에 시계탑 설치 협조요청

민원 요지

- 상주**(회장 ○○○)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2021년도 봉사사업으로 국민관광휴양지인 경천대의 경천섬 광장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시계탑을 설치하고자 낙동강 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였더니 하천 구역내에 민간(단체)에게 공작물 설치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에 경천섬에 필요한 시계탑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부지)에 무분별한 공작물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바 경천섬 광장의 시계탑 설치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공익성격이지만 민간(단체)에는 공작물 설치허가가 불가하다 하니 상주시에서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주**의 협조를 받아 상주시 주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 상주시에서 상주**로부터 시계탑건립을 기부 받아 상주시 기부금품심의를 거친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관공동의 시계탑설치 협의를 거쳐 경천섬으로 진입하는 교량입구에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계탑을 설치



시계탑 설치위치 및 설치된 시계탑

22 경계선 분쟁으로 인한 대체농로 개설방법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연원동 〇〇〇번지 등의 토지소유자인 민원인은 인접한 연원동 산 〇〇-〇 소유주와 경계선 분쟁으로 측량결과 농로가 폐쇄되어 많은 애로가 있는바, 지난해 상주시의 지적재조사 사업 때 민원인의 토지는 임야라 경계측량이 제외 되었다는 데에 대한 설명과 인접 임야의 농로길 폐쇄에 따라 민원인 토지로 출입 할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민원토지과
- 2020년도 연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때 민원인 토지의 현황측량이 제외된 것은 민원인이 인접 임야를 침범하여 경작하고 있었기에 이용하던 농로 또한 민원인 소유 토지가 아닌 인접임야에 위치한 관계로 경계분쟁 다툼으로 농로이용을 거부당하게 되었으며, 민원인이 침범한 부분의 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구역 밖으로써 제외되었으며,
- 농지 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측량은 인접한 산 〇〇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임야 소유주의 동의나 위임장이 있어야 측량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소요되는 측량비용 과 농로개설 방법들을 제시하고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23 비현실적 점용료 부과의 시정·개선 요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7년전 이안면 양범리 〇〇〇-〇번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서 출입로로 사용코자 도로와 태양광설치 토지사이의 구거 72m²를 출입로로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 산정에 있어 다른 구거 점용지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과다할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용료부과의 여러 가지 부당한 점들을 상주시와 관련 여러 기관에 건의와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이안면
- 민원인의 구거 점용료부과에 있어서 다른 구거들에 비해 점용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점용료는 소액이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으로도 형평성이 결여된 잘못된 부과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 민원인의 구거 점용지와 점용료부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점용허가 받은 양범리 0000-0(72㎡)은 도로에서 민원인의 태양광발전시설부지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의 비탈면임에도 공시지가가 없어 인근 농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점용료가 부과된 착오를 확인하였음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 1항3호에 의하면 사용료 징수는 공시지가가 없거나 감정평가가 불합리한 경우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을 간과하고 인근 토지인 태양광 발전시설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써 과다한 점용료부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상주시(이안면)에서 점용료를 조정코자 인근 유사토지인 임야의 점용료 적용을 제시함에도 민원인은 과다하다고 반발함에 따라 점용지(구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점용료를 조정 부과

24 수해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요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개운동 000-0번지에서 소규모 축산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택과 축사가 산 00번지로 둘러싸여 있어 우수기에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수량이 축사와 주택으로 흘러들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바, 도로에서 주택입구까지는 과거에 상주시에서 U자형 흠관배수로를 설치하여 주었는데 이것을 주택과 축사 주위로 100여m 연장 설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산림녹지과, 남원동
- 깊은산 골짜기의 하단에 위치한 민원인의 주택과 축사는 지형상으로 우수기에는 골짜기에 모여 내려오는 엄청난 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장소로 그동안 민원인은

피해방지를 위해 자력으로 물길을 만들었지만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들로 인해 배수로 역할을 못하게 되기 일쑤여서 상주시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된 흠관 배수로 설치를 원하고 있음

- 민원인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배수로 설치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예산까지 마련하였지만 배수로로는 민원인 토지가 아닌 연결한 산 〇〇번지에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주(종중)의 배수로설치 승낙이 필요한데 그동안 민원인은 물길을 만들고 생활편의를 위해 산 〇〇번지의 일부를 임의로 잠식하고 훼손하였다고 하여 종종에서는 배수로설치 승낙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차례에 걸친 설득과 현장 확인으로 종종에서도 승낙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기로 하였으며 남원동에서는 산주(종중)의 승낙만 되면 즉시 배수로 설치를 약속



현 황 도



현장 배수로 상황

25 마을안길의 배수로 설치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〇〇동 마을내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인 배수가 인접주택의 벽면을 보고 흐르도록 되어 있어 우수기에는 많은 양의 우량이 주택으로 쏟아 위험도 예상되는바 현장을 확인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동문동
- 민원인이 제기하는 현장은 마을내 30m정도의 3m폭 마을안길이 옳은 배수시설 없이 갓길로 자연 배수되고 있었으며, 이 또한 배수방향이 인접주택의 벽을 향하고 있어 우수기에는 주택의 피해도 예상되는바
- 관할 동문동장과 협의하여 PE관 300mm를 마을안길 지하에 매설하여 마을 간선 배수로로 연결시키고 상부는 콘크리트포장까지 하여 마무리하므로써 인접주택의 피해예방과 민원해결

26 폐교부지내의 거주지 불하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은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내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8년도에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상주시로 폐교를 매각할 즈음에 민원인 거주지역인 260㎡는 민원인에게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민원인이 분할측량까지 협의한 후 건강문제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이곳을 지금 불하받으려 하니까 폐교 전체가 상주시로 매각된 상황인바 상주시에서 종전 계획대로 민원인의 거주지를 분할하여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농업정책과, 회계과
- 상주시에서는 2019년 6월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낙동면)를 상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상주 감꽃마을 서울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그간의 상황이나 현장여건상 폐교부지내에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던 260㎡를 분할하여 민원인에게 매각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매각관련 절차 진행
- 먼저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관련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매각금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아 민원인에게 매각 조치

27 이장(里長) 활동에 대한 불만과 마을불화 진정

민원 요지

- 여러가지 마을 일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의견수렴 없이 이장의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장은 사퇴의사가 없고 면(面)에서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토록 하는데 대한 불만과 이의 해결을 주민 연명으로 진정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이장의 독선적인 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정에 관할면·본청 담당부서와 함께 다각적인 대화와 중재, 해당 주민들간의 노력으로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 종결 (내용생략)

28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사거리교차로의 코너에 위치한 상주시 낙양동 〇〇〇-〇번지 토지소유자로서 도로에서 토지로 출입하는데는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와 각종 교통신호등, 횡단보도로 인해 곤란하므로 토지 뒤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도시과
- 민원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바 2020.7.1 일몰제 시행전 상주시에서는 해제되면 곤란한 도시계획시설(도로부분) 79 곳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로 5년간 유예시켜 놓은 곳 중의 하나임
- 150m(B=8)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불가하고 2022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29 비포장 통행로의 불편해소 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은 화동면 ○○리 산 ○○번지에 산양삼 단지를 10여년 전에 조성하였으나 조성단지까지의 500여m가 폭이 좁은 비포장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출입로의 전체포장이 어렵다면 산양삼단지와 접한 250m정도의 대체통행로를 개설·정비하여 통행에 도움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화동면
- 민원인의 산지약용식물(산양삼) 조성단지까지의 출입로 4~500m는 좁은 비포장농로로써 통행이 불편하나 농로이용도나 효율성에 비해 많은 예산소요로 당장 포장하는 것은 어려우며
- 민원인의 요청대로 산양삼단지와 접한 대체 통행이 가능한 250m에 대하여 관할 면장과 협의하여 잡초제거와 노면을 다지고 쇄석을 깔아 통행에 편리하도록 정비



사업전 현장

쇄석으로 정비된 통행로

30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의 부당운영 시정요구

민원 요지

-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의 독단적인 조합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과 정상적인 조합운영을 바라는 진정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기존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함과 불화를 확인하고 새 협동조합 구성 (내용생략)

31 보조금의 자부담분 인하 조정요구

민원 요지

- 상주민요는 경상북도와 상주시에서 육성보전 해야 할 무형문화재임에도 2021년도 상주민요 보존회관 보수 보조금지원에 있어 50%의 자부담을 시킨 것은 다른 보조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성격상 과다하다고 생각되기에 이의 조정을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 상주민요는 1987년도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상주시 초산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전승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 초산동에 위치한 상주민요보존회관의 노후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자부담조건으로 상주시에서 보조금 지원결정 하였는바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주민요 보존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함에도 상주민요 보존회관 시설보수비의 △△%를 자부담 시킨 것은 보조의 목적이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을 공감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자부담 비율을 최소로 조정하여(50→10%) 민요 보존회관을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

32 농지전용에 대한 고발조치 구제요청

민원 요지

- 화북면 상오1리 ○○○-○(답, 1714m²)은 상주시의 경승지인 장각폭포와 접한 토지로써 화북면에서는 농지 진입부분의 출입로 일부가 지목이 하천으로 하천관리를 위해 점용을 불허함에 따라 민원인은 진입로가 없어 농지전용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주차장과 평상을 설치한 그늘막을 유료로 제공하자 농지법 위반으로 조치를 당할 처지라 이의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화북면
- 민원인은 2020년도에 화북면 상오리 〇〇〇-〇번지의 농지전용 신청을 했으나 농지 전용지 진입부분 35㎡가 지목상 하천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농지점용 허가도 받지 못하고 관련서류를 반환받았음
- 화북면에서는 국토부 고시 2019-408호(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에 따라 농지출입로 부분의 하천점용을 불허한다고 하나 하천관리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 갈등 문제로 농지출입로 점용을 불허하므로써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원인은 농지전용과 하천부지 점용 불허시 소송으로 구제 받겠다는 의사표시



하천지목의 농지진입로



농지법 위반 행위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해 오던 중 2020년말 상수도를 설치한 후부터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지난 겨울엔 지하수모터가 고장 나고 지하수연결호스가 얼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하며 상수도 공사시 공사업체에서 지하수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서 공사비도 지불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의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 공사시 집안연결 수도공사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써 당시 수도 공사업체에서는 민원인과 협의한데로 수도설치를 마쳤지만 민원인의 요구가 무리하게 계속 되고 있어 민원인과 손절한 상태임
- 민원인은 홀로 거주하는 노령임에도 수도문제로 2차례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였으며, 집안 내부공사는 외부업체에서 하여야하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그간 상수도와 함께 지하수 사용도 가능하게 조치해 주고 하수도 막힘 부분도 해결하여 주었으나 민원인의 계속되는 요구사항 수용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계량기에서 집 내부의 배관공사는 민원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하고 안내

34 공용주차장내의 대형 피해목 제거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서문동 〇〇〇-〇번지(대, 1445m²)는 공용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위치한 수십년된 대형수목(은행나무, 오동나무 등)이 인접 4층 건물까지 가지가 뺏어나가고 은행나무의 열매로 인한 악취나 낙엽 등으로 주위에 많은 피해는 물론 강풍에 전도시 큰 피해도 예상되고 있지만 엄청난 대형수목으로 개인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워 이의 제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안전재난과, 동문동
- 현장 확인결과 은행나무는 인접 4층 건물보다도 더 높게 자라면서 인접한 건물에도 가지를 뺏어 피해를 주고 있을뿐 아니라 전도시 주변에 많은 피해도 예상되지만 개인이 조치하기엔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 이에 피해목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공용주차장 관리와 선제적 피해예방 차원에서 상주시(안전재난과)와 동문동에서 수목제거 전문업체를 통해 제거 조치



작업 전



피해목 제거 및 완료

35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수혜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내에서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민원인은 숙박업소 내부 시설보수와 대형 안내간판을 교체코자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민원인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경제기업과
- 민원인이 희망하는 상주시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지원 사업들은 모두 신청을 마감하여 불가능한 상황이라 다른 기관의 지원 사업까지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2천만원까지, 70% 지원)”이 시행중에 있음을 알아내고 신청토록 안내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되었음

36 진입로 멸실로 맹지가 된 경작지의 대책요구

민원 요지

- 상주시 오대동 ○○○(답, 3081m²)번지는 도로에서부터 지목상 하천에 형성된 30m 정도의 출입로를 수십년간 이용하여 왔는데 최근 인접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면서 실시한 경계측량결과 출입로의 절반이 건축주의 사유지로 확인되어 출입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맹지가 되어 영농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제3자에게 점용허가 중인 출입로와 접한 하천부지의 일부를 민원인의 출입로로 점용·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신흥동
- 민원인의 인접토지에서 건축을 하면서 경계측량결과 경작지 출입로의 일부가 사유지로 확인되면서 출입로가 없어져 발생한 일로써 인접 건축부지도 당초 하천이던 것을 2000년도에 불하할 때 하천상의 출입로는 제외하고 불하했어야하는 것을 그렇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임
- 연접하천부지 피점용자의 동의를 구해 점용허가중인 하천부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조정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나 피점용자의 반발에 민원인도 연접 하천부지의 점용허가기간(2021.1~2025.12월) 만료까지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우회해서 다니다가 점용허가기간 갱신때 조정하여 출입로를 내는 것에 동의하고 마무리



예전 출입로



경계측량으로 멸실된 출입로 부분

37 잡석투척으로 인한 장비파손 및 현장복구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서곡동 〇〇〇-〇번지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동성동에서 시행하는 마을 공사현장에서 나온 잡석들을 덤프트럭으로 민원인 토지의 언덕위에서 10여m 아래쪽으로 쏟아 붓는 바람에 아래쪽 개울에 설치해 놓은 민원인의 고압양수기가 파손되고 개울이 막히는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보상도 없는 데에 대한 불만 제기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동성동
- 민원현장에 투척된 것은 폐기물은 아니며 동성동에서 시행한 서곡동 마을안길 선형개량공사에서 나온 토사나 잡석들을 도로사면의 침하방지를 위해 보강하고자 한 것이나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설명없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높은 언덕에서 아래쪽으로 붓다 보니 아래쪽에 설치된 민원인의 양수장비가 파손되고 자칫 인명 피해까지도 우려스러웠었지만
- 동성동에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한 적극적인 조치와 원활한 중재로 공사업체에서 민원인의 파손된 양수장비 보상과 언덕사면에 투척된 잡석들을 정리하고 이외의 사소한 일들은 민원인이 양해하면서 원만하게 종결

38 공중화장실의 공용화 관리요청

민원 요지

- 지난해 상주시에서 〇〇동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출입문이 항상 잠겨 있어 필요시 이용할 수 없고 화장실 열쇠는 관리자가 소지하고 있어 명목만 공중화장실이지 사유물화 되고 있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방되고 관리되도록 지도감독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동성동, 환경관리과
- 상주시에서 2020년도에 ○○동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백만원의 예산으로 남·여 공중화장실(27.65㎡)을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인근 □□□에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와 화장실 관리의 애로로 그동안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음
- 이에 담당부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중에게 공중화장실임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건물에 표식부착과 코로나19로 개방을 잠정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안내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 호전시 개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39 양식장관련 판매시설의 건축신고 수리요망

민원 요지

- 민원인은 화남면 ○○리의 농업진흥지역에 양식장(새우)허가를 받아 3년 전부터 운영하여 왔는데 이번에 양식장 옆에 컨테이너 2개의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건축신고를 한바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불가하다고 하는바 양식장도 농지법시행령 제29조②항에 의한 시설로 보고 판매장 설치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가능한 조치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민원토지과
-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②항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제조업이나 공장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포함)에서 생산된 제품판매 시설은 가능하나 양식장은 가공처리시설이 없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써 판매장 건축행위는 불가하기에 내용 검토를 위해 양식장건축허가 도면까지 확인하였으나 가공처리시설은 없었으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도 불가한 것으로 확인하였음(단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관장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구관장은 가능)

- 이에 대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1천㎡미만의 부지에 농산어촌체험시설은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⑦항 제8호에 의거 가능함을 제시함에 따라 민원인은 판매장설치 면적(172㎡)을 분할하고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양식장→판매장) 받아 판매장 설치 허가를 득하여 설치완료

< 농지법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농지법 시행령 >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②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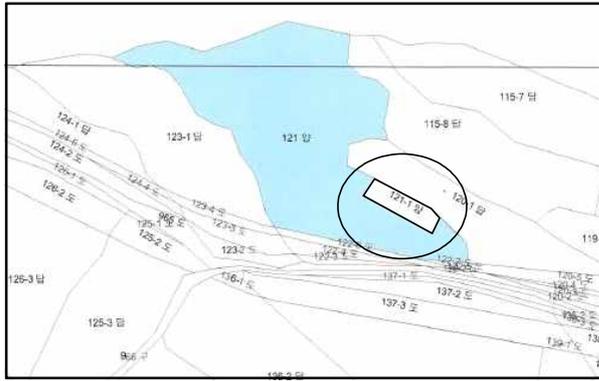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머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⑦법 제32조제1항 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7호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나.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지적도(판매장 설치장소 분할)



판매장 설치전경

40 귀촌에 따른 정착애로사항 지원요청

민원 요지

- 서울에서 공성면 ○○리 산 ○○번지로 귀촌하여 임야에 산양삼을 재배한지 3년째 이지만 주택건축이나 농업용수용 관정개발도 기존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마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컨테이너 농막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바 인접한 산 ○○번지 산주와 협의하여 진입로를 낼려고 하나 소유자 주소가 바뀌어 연락도 취할 수 없는바 이에 도움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농업정책과
- 민원인은 농촌생활의 꿈을 안고 귀촌하여 현지 주민들과 융화하려고 노력중이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며
- 지역 주민들과 관계되는 일들은 좋은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상담과 조언하면서 인접한 임야의 변동된 소유주 연락처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찾아 주어 진입로 개설협의를 도움을 주고 필요시 행정적인 지원역할을 약속

41 상가 냉방기 실외기와 환풍기로 인한 피해방지

민원 요지

- 상주시 시장내 상가에서 식품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은 도로건너 맞은편 빙과류 판매점의 실외기와 환풍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및 소음으로 민원인 상점은 물론 상점 3층의 거주공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빙과류점 건물 뒤쪽으로 실외기 이설을 몇차례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가건물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빙과류판매점의 실외기 2대를 건물 뒷편으로 옮겨보려 했지만 이설거리가 너무 길어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실외기 열기가 직접 뿜어 나가지 않도록 실외기에 팬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 상가 건물 간에는 7m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민원인 상점에서 맞은편의 실외기나 환풍기의 열기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에는 건축물의 배기시설 설치기준은 규정되어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주변 상가들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하기는 어려운만큼 빙과류점은 야간에는 실외기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실외기 팬가이드의 반사각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실외기로 인한 피해가 미미할지라도 전혀 없지는 않는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도록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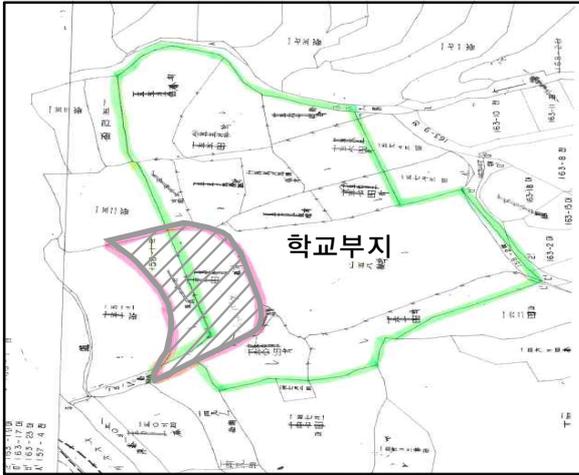
42 학교부지로 착오이전된 토지의 반환요구

민원 요지

- 민원인의 부친은 공검면의 ○○중학교 설립당시인 1970년경 학교부지로 경작지를 기부하는 과정에서 경작지 962평중 학교부지로 실제 편입되는 2/3만 기부하기로 했는데 전체 농지가 한꺼번에 학교부지로 이전된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학교밖에 남은 경작지 1/3을 민원인 땅으로 알고 경작하여 왔었는데 2년전 상주시에서 폐교된 ○○중학교를 매입하여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기부 당시 의사에 반하여 이전된 학교밖 땅의 소유권을 민원인에게 돌려주기를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농업정책과
- 1970년도에 ○○중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부지를 기부받을 때 △△리 ○○○번지 962평중 현재 학교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 289평은 제외하고 기부되어야 하는데 962평 전체가 한꺼번에 경상북도(교육감)로 이전되었다고 민원인은 주장
- 민원인이 잘못 기부되었다고 반환을 요구하는 공검면 △△리 ○○○-○(956.7㎡, 289평)는 기부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로 학교담장밖에 위치하여 학교부지로 보기엔 어려울뿐더러 다른 농지와 함께 1998년 경지정리가 되어 환지까지 학교소유로 마친 과정에서도 민원인이 소유권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의아 하지만 학교측에서도 그동안 경작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나 소유권 주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민원인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 2019. 10월 상주시에서 폐교를 매입하여 귀농·귀촌형 공공형 임대주택 20세대를 건립중으로 경상북도(교육감)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한 토지를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는 민원인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상주교육지원청과 기부당시부터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시킴



당초 민원인 토지와 학교부지



학교담장 밖 민원인 반환요청지

43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언행 주의 촉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7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 홀로 아파트단지에 입주하여 오던중 아파트 관리비가 과다한 것 같아 고지내용을 문의차 관리사무소에 들렀던바 관리소 직원들의 대응태도나 답변이 괘시하고 무시하는 언행 같아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지만 혼자 대응 할 수도 없었으며 평소에도 민원인에게는 물론 입주민에게도 갑질 비슷한 모습들을 본적이 있는바 관리소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 민원인은 고령의 나이가 되도록 홀로 깨끗하게 살아 오셨다고 자부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무심한 언행 하나도 민원인에게 인격적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괘시하는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바
-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소장 ○○○)를 찾아 그간의 정황들을 듣고 민원인도 향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요청에 따라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사무소인 만큼 한분의 입주민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직원 교육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44 하수도관로 매설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대책

민원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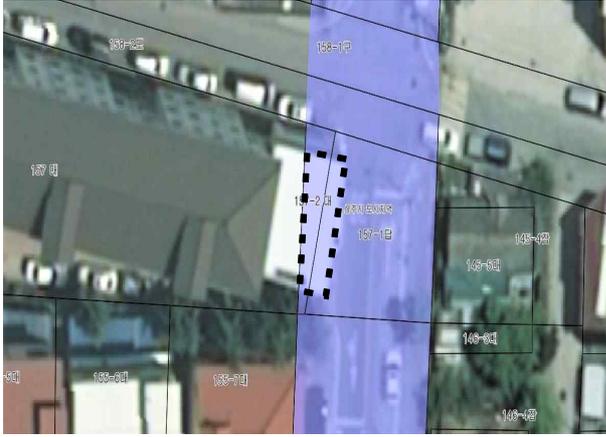
- 침수지역의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로매설이 민원인 건물로부터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하 매설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등 피해는 물론 건물이 사거리 교차로코너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하여 있다 보니 인도도 없고 시야장애로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상주시에서 건물을 매입·철거하여 도시계획도로도 확보하고 하수관로 매설공사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도시과
- 2018년부터 6년간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사업으로써 사거리 교차로코너에 위치한 민원인 주택은 아파트단지의 상가동 건물로 건물의 1/2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하여 건물 모서리쪽은 인도도 없으며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나 아파트단지와 공유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독으로 소유권행사가 어려워 보상도 곤란하고 건물철거의 필요성을 크게 못느껴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임
- 민원인도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하수도정비 사업부서에서도 민원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물보상 후 철거가 필요한 사항이라 수도사업소에서 도시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건물의 보상을 위한 감정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민원인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공유물건으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거 대지권이 해제되기 전에는 상주시에서 매입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공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설정된 대지권을 해제 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안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치도(도로침범 부분)



도로침범 건물

45 공사장의 각종 체불대금 해결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의 다수는 중동면 ○○리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각종 자재대, 장비대 및 노임 등 *억여원의 체불대금이 발생하였다면서 전기공사는 마치고 토목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준공전에 조속히 체불대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민원토지과
- 태양광발전시설 토목공사가 마무리중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부서와 협의 하여 원청회사 및 체불한 하청업체, 관련 근로자가 곧바로 한자리에 모이도록 주선하여(2021.9.13 14:00) 체불업체인 ○○건설로부터 2021.10월말까지 개인별로 체불금을 청산하겠다는 공사비 직불약정서를 받고 상호 합의하였음
- 아울러 약속위반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담당하는 상주고용복지센터나 노동부 영주지청에 체불대금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상주시에서도 토목공사 준공처리전 체불대금 청산에 관심가질 것을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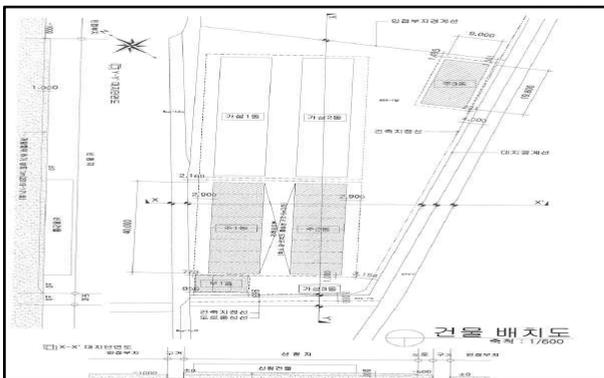
46 축사 그늘로 인한 농작물피해 조치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헌신동 〇〇〇-〇번지에 농지를 가진 민원인은 2020년도에 민원인의 인접농지에 동서방향의 대형축사가 건립 운영되면서부터 축사 바로 뒤편의 민원인 농지는 높은 축사건물의 그늘로 인해 벼농사의 작황이 좋지 않은바 축사가 토지 경계로부터 70c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격거리와 건폐율 적용이 맞게 건축되었는지 여부와 판넬로 되어있는 축사지붕을 투명한 재질로 바꾸면 햇볕이 투과되어 벼작황 피해가 덜할텐데 이에 대한 확인과 중재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 본 축사는 민원인 농지와 폭 50cm정도의 U관수로 사이에 두고 수로경계로부터 70~150cm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되었는바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150cm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하지만, 생산녹지지역인 동 축사건축물의 이격거리는 50cm이상이면 되는 건축관련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며, 건폐율도 당초 허가받은 축사 1053.68㎡는 부지면적 5273㎡의 19.98%로써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20%에 충족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로 가설건축물 1040㎡(2동)를 축조 신고하였는바 가설 건축물은 건폐율 적용에 제외되는 것을 오해하고 건폐율 위반으로 의심하였으며
- 축사건물의 그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넬 축사지붕을 투명한 폴리카버네이트 재질의 지붕으로 교체하는 것을 축사건물주와 협의 중재한 결과 지금은 올해 농사도 끝나고 바쁜 수확철인만큼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 지붕교체작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민원인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면서 민원인과 축사 소유주간의 원만한 중재로 문제해결



축사 배치도(본건물 및 가설건축물)



농작물 피해지역

47 관리부실한 축사악취와 불법건축물 조치요구

민원 요지

- 마을과 접해있는 내서면 ○○○로 ○○○번지에 위치한 축사는 퇴비사 운영도 하지 않고 축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심한 악취로 인접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불법으로 증축한 축사건물도 있는듯 한데 이에 대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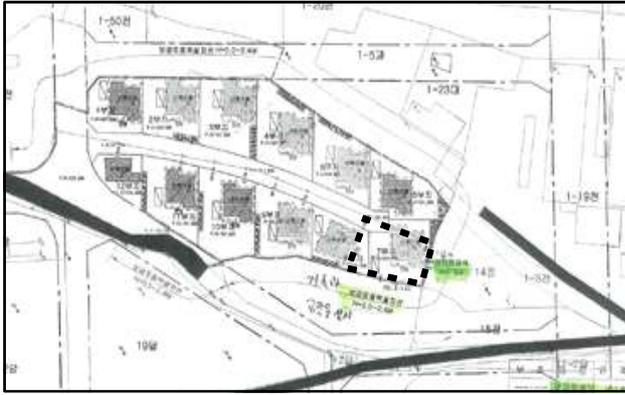
- 관련부서 : 환경관리과, 건축과
-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축사는 퇴비사(194.4㎡)를 갖춘 기존의 축사 4동에다가(총 760.7㎡) 그동안 무단으로 증축한 3동(총 160.6㎡)의 축사에 대하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으로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2020.9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2022.9월까지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써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 축사관리 부실로 악취가 심한 것은 환경부서에서 직접 현장지도와 계도를 통해 퇴비사 운영과 축분관리의 철저로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수시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있을시 즉각 조치할 것임을 강조

민원 요지

-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접하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2.4m~3m 높이의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택지조성 사업의 형질변경 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이에 대한 민원제기로 상주시에서 2017년도에 설계상이나 개발행위의 적정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중간회신이 있는 후 결과통보가 없었는데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민원토지과
- 상주시 냉림동 ○-○○번지 일대에 0.5~2.4m 높이의 옹벽구조물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택지조성을 하던 중 인접한 민원인과의 마찰후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로 민원인 주택과 접한 쪽의 옹벽블럭 5단중 1단을 낮추었지만 그 후 택지조성지를 분양받은 자가 다른 블록과의 토지높이를 맞추기 위해 30cm정도의 성토를 추가로 함으로써 민원인은 재차 이의를 제기하고 당시 개발행위의 적법성과 합의과정의 관계 서류 및 조치사항을 확인 요청함
- 2017년도에 옹벽 블록 1단(50cm)을 낮춘 것은 허가받은 높이 2.4m범위내로 문제가 없었지만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가 있었기에 허가부서의 개발행위 적정여부 조사는 중단하고 조치사항은 없었으며, 그 후 분양 받은자가 약간의 성토를 추가로 하였지만 현장 측정결과 허가받은 높이 2.4m의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기에 적법한 것으로 보고 다만 성토한 위에 쇄석을 깔 것은 당초 허가에 없던 사항으로 견어내도록 조치



택지조성 평면도



현장 확인

49 마을출입에 지장있는 도로변화단 제거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내에서 상주IC 가기직전 ○○동에서 우측 마을로 출입하는 도로변의 화단이 마을 진출입에 지장을 주면서 도로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제거하여 주변 마을 진출입이나 도로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주차에도 편리하기에 가로화단의 제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도시과
- 왕복 6차로의 대로변 가로화단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마을 진출입이나 도로변 상가이용 차량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화단제거가 필요하겠지만 도로관리측면이나 도심녹지공간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가로화단을 축소하는 것도 신중해야 할 실정임
- 담당부서와 몇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한 결과 마을 진출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편이며, 현장의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마을출입로 10m후방에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중인 관계로 이로 인한 버스승강장이나 교통표지판의 이동설치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된 교통상황들을 운영해본 뒤 이로 인한 불편한 점이나 필요성이 제기되면 가로화단을 조정해 주기로 담당부서 및 민원인과 협의 중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사별국면 ○○리 ○○○번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2018. 9월에 상주시로부터 3년 설치기한으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동안 민원해결과 분묘개장 조치를 하고 지난 8월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 사업임에도 사업허가 기한인 2021. 10. 14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발전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분묘이장과 설계용역 등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발전사업 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교통에너지과
- 민원인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동안 민원해결과 묘지이장,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허가기한까지 개발행위 허가절차가 진행 중 임에도 상주시로부터 허가 기한내 발전사업 착수가 되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
- 전기사업 관련규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민원인은 그동안의 사업추진 노력들과 발전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개발행위허가)이 처리 중에 있는 만큼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사업기한을 연장하여 주기를 요청하나
- 상주시에서는 3년이란 준비기간 동안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한 것은 민원인의 귀책이며,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한국전력의 전력계통 연계지연이 있었다는 사유만을 인정할 뿐이며, 이는 유권해석(법제처, 2021.5.3)과도 상통하며, 또 지금까지 허가취소에 적용해온 상주시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불가피한 지연사유 외엔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민원인은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음

51 농로로 이용할수 있도록 도로개설 요청

민원 요지

- 함창읍 증촌리 〇〇〇-〇(도로, 건설부)번지는 지적도에는 3m정도의 폭으로 농지사이를 지나고 있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변의 농지출입에 많이 불편한바 증촌리 〇〇〇번지와 〇〇〇번지 사이를 지나는 도로지목을 개설 포장하여 주변 농지의 영농불편 해소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개발지원과, 함창읍
-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설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어 영농출입에 불편하니 개설하여 농지 출입로로 이용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으로
- 150m정도의 농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조치를 확인한 후 도로개설시 연접한 일부사유지가 다소 편입될 수도 있는만큼 도로개설지역 주변 토지소유주의 동의만 되면 즉시 개설해 주기로 하고 민원인이 주변 농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

52 도로변 감나무의 소유권 확인요청

민원 요지

- 민원인은 2년전 낙동면 〇〇리 〇〇〇-〇(전, 2214㎡)번지 토지를 경매 받아 귀촌한자로 경매부지와 큰 도로 사이의 경계를 따라 심겨진 25주의 감나무도 당연히 같이 경매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경매 전 종전 토지소유주가 토지만 경매되었지 감나무는 경매부지와 상관없이 도로가에 자기가 심은 것이라며 감나무 수확물을 차지한다기에 정당한 소유자를 밝혀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 문제의 감나무는 경매로 넘어간 종전 토지소유주가 15여년전 낙동 유곡~상촌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 후 칼날같이 110여m 길게 형성된 〇〇리 〇〇-〇번지상의 도로

부지인 도로비탈면에 심겨진 감나무로써, 2년전 토지는 경매로 넘어갔지만 토지와 도로사이의 도로부지인 도로비탈면에 심겨진 감나무는 심은자의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서로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확인결과 감나무가 심겨진 도로비탈면은 ○○리 ○○○-○(도로, 960m²)번지로써 2006년 도로확포장 공사시 도로에 편입되어 상주시로 소유권 이전된 상주시의 도로부지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은 것인바 이는 도로 무단점용에 해당되어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조치됨을 주지시키고 감나무 식재자와 연결 토지를 경매 받은자가 합의하여 관리할 것을 중재

53 영농조합의 부실운영 지도요청

민원 요지

- 낙동면 ○○리의 ○○영농조합법인은 △억여원의 지원 사업으로 육묘생산을 해 오고 있는데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원들은 자부담만 부담한 채 수익이 없어 배당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산도 형식적으로 하고 조합원들의 궁금점도 무시하는 등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조합원 대부분이 고령인므로 답답해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조합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 조치해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 영농조합법인은 낙동면 하수슬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2011~2012년 △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고 육묘장과 온실시설을 하여 그동안 14명의 조합원이(60~90세의 고령) 지원(보조)금 외에 △~△백만원씩의 출자를 하여 육묘를 생산 공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임
- 본 영농조합은 조합정관에 의해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합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기 어렵지만 조합운영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도록 대표이사에게 촉구하고 보조금 지원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조치

54 구거부지에 배수로설치 사용승낙 요청

민원 요지

- 사별국면 ○○리 ○○○-○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은 민원인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해 배수로를 확보하고자 60여m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U관배수로까지 구거부지를 따라 자력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연결 이용코자 하는데 배수로설치 구간이 구거부지(국, 농수산부)로 되어 있어 관리청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민원토지과, 건설과
- 현장 확인결과 5~10m정도 폭의 구거지목에 3m정도 폭의 콘크리트포장으로 농로가 되어 있고 농로를 따라 U관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인 토지와는 60m 정도의 배수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 구간을 민원인이 배수로를 직접 설치하여 기 설치된 배수로와 연결하여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
- 설치구간이 지적도상으론 폭이 5m이상의 구거중 3m폭 정도만 포장되어있어 포장농로를 따라 U관 배수로를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는 것은 국유지인 구거를 개인이 점용허가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항이기에 배수로신설구간 60여m는 구거부지를 벗어난 사유지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배수로를 설치하면 행정기관에서 신설배수로를 기존배수로로 연결하고 기존배수로는 합류로 인해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수용 할 수 있도록 기존 U관배수로 폭 500mm를 확대 매설하기로 하여 해결



기존배수로 및 설치계획



배수로 설치계획

55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명익에 대한 이의

민원 요지

- 민원인은 7년전 중동면 ○○리 ○○○번지에 낙향하여 모친을 모시며 살아왔는데 살고 있는 주택 등 건축물들이 그동안 집안에 출입도 않던 형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바람에 2021년 3월 이를 근거로 형이 형 앞으로 등기를 하고 민원인은 쫓겨날 형편인바 민원인은 상속받으려고 상속대상자 대부분의 동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문제로 형과 소송이 붙게 되었는바 이는 건축물대장에 형 이름이 등재된 것이 원인이므로 행정에서 등재과정과 등재이유를 밝히고 정정해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축과, 중동면
- 중동면 ○○리 ○○○번지의 건축물대장은 50~60년전 과세를 위한 가옥세 과세대장을 운용하던 중 1977년 과세를 위한 과세대장과 소유권 증명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구분관리 계획에 따라 1979년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며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등재는 1999년 중동면의 요청에 의해 기재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대장에 형 앞으로 소유자 명익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안 민원인은 이의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확실한 근거와 그간의 경위확인 없이 재산과 관련된 공부내용의 정정은 곤란하며, 형과 소유권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안내

56 경지정리후 환지받은 토지의 실소유자 확인요청

민원 요지

- 낙동면 ○○리에서 농업에 종사해 온 민원인은 2013년도에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한 후 환지받은 ○○리 ○○○○번지(1729㎡)의 소유자 주소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명의의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알고서 특별조치법으로 정정·이전코자 하던 중 같은 지역에 살았던 민원인과 동명이인인 아들로부터 돌아가신 부친 땅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 특별조치법 조치가 중단 되었기에 지금까지 환지받아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서 경작해온 땅이라며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맞다는 확인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상주시사)
- 2009년도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에서 시행한 낙동강의 준설토로 인근 ○○리 농경지를 복토하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후 2013년도에 환지를 한 곳으로 공교롭게도 같은 동네에 민원인과 동명이인이 있어 환지과정에서 동명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환지토지와 소유주가 뒤엉킨채 지금까지 경작해온 사실을 경지정리담당부서 및 지적담당부서, 농어촌공사 상주시사와 함께 확인하였으며
- 민원인에게는 환지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진 내용들을 설명하여 주고 정확한 환지내용과 실질적인 토지소유자 확인은 당시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업무를 담당할 농어촌공사 상주시사에서 밝혀주어야 할 사항임을 농어촌공사 상주시사와 민원인에게 안내

57 축사관리의 지도감독 요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5년전 상주 시내에서 낙동면 ○○리로 이주하였는바 마을 입구의 축사와 인접한 곳이어서 이웃의 다른 집들보다 축사로 인한 악취나 파리들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특히 비가 오거나 흐린날은 유독 심한바 철저한 축사관리의 지도감독을 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환경관리과
- 낙동면 ○○리의 10여호가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 입구에 10여년전부터 15두 내외의 소규모축사가 있는 옆집에 민원인이 이사를 함으로써 야기된 민원으로 환경담당부서의 점검시 150㎡정도의 소규모축사로 악취는 미미하였으나 퇴비사 운용을 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평소보다도 청결한 축사관리와 민원방지 노력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계획임을 주지시킴

58 사유지 매립장에 대한 건축지원이나 보상 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동 ○○○번지 일대는 30여년전 상주시에서 사유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민원인은 쓰레기매립지였던 ○○동 ○○○-○번지에 2021.8월에 단층 335㎡(3동)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매립지 건축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축시 안전성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추를 해본 결과 지하에 1.2m정도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후 그 위에 2.4m정도의 복토를 하여 30년이 지난 상태이나 사유지 매립장에 대한 관리상황 등 제반정보와 매립쓰레기의 이적이나 피해보상 등 상주시의 대책을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환경관리과
- 상주시 ○○동 ○○○-○일대 8,400㎡는 지대가 낮은 무논의 농경지로 영농에 애로가 있던 지역을 상주시에서 1990.1월부터 1992.2월까지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후 복토를 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후 2.4m 정도의 복토를 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비위생 사용종료매립지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곳임
- 통상 매립지는 30년정도 지나면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2021.11월에 매립장에 대한 상주시의 사후관리 조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용역)에 의하면 지반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정화단계이나 매립가스 중 메탄(CH₄) 성분비가 안정화 기준인 5%이하보다도 높은 40% 내외로 나타나 매립폐기물의 분해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상에 건축을 하는 것은 안심할 수 없으며 농작물 또한 정상적으로 수확 할 수 없는 상황임
- 민원인은 건축을 하는 것이 불안하게 되자 매립물의 이적이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원하고 있으나 상주시에서는 매립당시 토지소유주와의 사용승낙이나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기에 현 토지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은 불가함을 밝힘에 따라 민원인은 기초를 보장하여 건축을 하거나 피해보상은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



매립장 현황도



현장 전경

59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요지

- 상주시 ○○동 ○○○-○번지에 소규모 점포 3개를 가진 민원인은 코로나19와 함께 점포임대가 여의치 않아 2020. 6월 수도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수도 휴전신청을 하였는데 최근 그동안 16개월분의 수도요금 △△만여원이 체납되었다며 통보를 받은바 휴전기간 중은 최저의 기본요금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휴전 후 처음 3개월은 엄청난 요금이 부과되기도 하였으며 요금납부서가 오랫동안 건물주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문의 하였지만 흔쾌한 답을 듣지 못하여 이에 대한 경위와 전화응대에 대한 불만제기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지난해 수도 휴전신청을 한 3일후 다시 수도를 쓰겠다는 누군가의 개전신청이 있었고 수도꼭지도 딱 잠궈지지 않은 상태로 누수와 함께 3개월간은 상당히 많은 수도요금이 나왔으며 그 후 지금까지는 월 3천원내외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었음. 그동안 고지서는 상가건물에 꽂아두거나 전달하는 식으로 관내 수많은 수용가관리나 체납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실도 있지만 수도개전 사용은 점포 3곳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곳에서 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함
- 수도 휴전신청은 하였지만 개전신청은 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주장과 수도꼭지 관리가 허술하여 누수도 있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상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3개월간은 누수로 인정하여 누수 금액에 대한 2분의1을 감액한(△△△천원) 재조정 고지와 납부로 종결하고 민원인과 전화응대 과정에서의 언행문제는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

민원 요지

- 상주시 냉림안길 〇〇번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민원인은 4개월전 노후 된 상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후 누수가 되어 상주시에서 누수요금의 50%를 감면받은 후에도 △△만원이나 자동인출 되었는바 계량기 교체공사 직후 누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2년전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시 보호통과 연결된 인입관의 녹 쓴 부분을 건드린 것이 원인일 것 이라는 주장에 보수업체로부터 당시 보수공사비중 일부를 최근에 환불받기도 하였는데 매월 2만원내외이던 수도요금을 누수요금의 50%를 감면받았지만 누수원인이 2년전 공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누수요금 전액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이의신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민원인은 최근 발생한 엄청난 량의 누수원인이 2년전 수도계량기보호통 교체시 계량기 보호통에서 수용가 쪽으로의 녹쓴 급수관을 일부 굵은 부분이 약해져서 터진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연급수관이 오래되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식되어 누수된 것이지 2년전 녹쓴 부분을 살짝 굵은 것이 지금에서 터졌다고 하는 것은 누수와 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보수공사비중 일부를 돌려 준 것은 공사잘못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 민원인의 이의에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돌려준 것이라고 함
- 수도계량기에서 옥내쪽은 수용가 책임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누수로 간주하여 상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만원의 누수요금중 2분의 1을 감액(△△만원)하여 납부케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민원인의 전액 감면 요청은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불수용(기각) 처리

61 마을상수도 폐쇄에 따른 수도 급수요청

민원 요지

- 상주시 인평2길 〇〇-〇번지에 2009년 5월부터 하우스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을 하고 생활하여 오던 민원인은 2020년도에 상수도급수시설이 보급되면서 그동안 이용해 오던 마을상수도는 2021.11월말 폐쇄되고 건축물이 아닌 하우스형주거시설에는 수도급수시설을 할 수 없다는 상주시의 조례에 따라 10여년동안 전기, 수도공급의 혜택속에 생활해 온 민원인에게 생활용수가 중단되는 것은 생존권 박탈이나 다름없는 망막함에 무허가이지만 하우스 주거시설에도 수도급수 조치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상주시 인평2길 〇〇-〇번지 하우스시설에 전입을 하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면 생활하여 오던 중 상수도 급수구역에 편입되어 상수도가 설치되면서 기존 이용하던 간이상수도의 폐쇄방침에 따라 당장 급수공급이 끊이게 되었지만 허가받은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하우스시설에는 수도급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 상주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만 수도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상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관련 창고나 축사시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곳의 수도급수를 제한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2021.11.19.~12.9까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의견을 조회중이었음
- 이에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무허가인 하우스시설이라도 수도급수가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읍부즈맨은 관련조례(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민원인에게 급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우스 주거시설



위 치 도

62 공공사업편입물건 보상금지급에 대한 이의

민원 요지

- 왕산공원조성사업 편입으로 인해 ○○○을 하던 세입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
○ 운영을 중단해야 할 처지의 민원인은 보상금으로 △△백만원을 통보받았으나
다른 상인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같은데도 구체적인 보상내용 답변도 듣지
못한 채 보상금을 수령하기가 미심쩍어 보상금 산정의 적정여부와 보상에서 누
락된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해 주기를 요망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산림녹지과
- 상주시에서 수년전부터 왕산역사공원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변 편입물건
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지장물 및 상가에 대한 영업여부를 감정평가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았으나 민원인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관련
서류제출이 없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영업 손실보상은 제외 한 채
○○○기거나 간판 등에 대한 이전비만 산정하여 보상금수령을 통보하였던 것임
- 민원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전비만 평가되고 영업 손실보상은 누락
된 것을 확인하고서 담당부서에서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각종 공과금납부서 등)들을
제출받아 1개월내로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결정

민원 요지

- 조부 명의의 상주시 내서면 ○○리 산 ○○○번지를 최근 특별조치법으로 삼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난 직후 2017년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임야가 산 ○○○-○(491㎡)번지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도로편입 임야의 보상을 요구하니 작고하신 조부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분할된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특별조치법으로 한꺼번에 이전했더라면 이전비용이나 이전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상금도 쉽게 받을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분할된 도로 편입 임야가 소규모면적으로써 보상금에 비해 이전등기비용이 과다함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동안 특별조치법 이전과정에서 임야가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하나 얘기해 주지 않은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제기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관련부서 : 건설과
- 2017년도 지방도 901호선 확장공사에 조부명의로 임야 ○○○번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산 ○○○-○분할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특별조치법으로 산○○○번지만 삼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나서야 도로 편입된 임야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안 민원인은 다시 분할된 산 ○○○-○번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절차를 취하려 하니 적은 면적이지만 모든 절차를 취해야하는데 대한 번거로움과 도로편입지의 보상금에 비해 이전등기 비용의 과다로 보상금수령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행정절차에 대한 불만과 간소화 해결방안을 요청
-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소유권이전 지역보증인(법무사)이나 접수기관(상주시)에서 분할된 토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얘기해 주지 않은 관계로 산○○○-○번지를 산 ○○○번지와 함께 이전하지 못함으로 초래한 불만민원으로 분할 지번의 임야를 가평가해 보고, 등기이전 수수료도 산 ○○○번지를 이전한 지역 보증인과 협의하여 추가부담 없도록 하므로써 보상금수령이 최대가 되도록 하였으며 민원업무 처리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세심한 서류검토와 연관성 여부확인도 필요함을 강조

제 도 홍 보

I. 옴부즈맨 활동

II. 옴부즈맨제도 홍보

제 도 홍 보

I

옴부즈맨 활동

2020년 운영성과 보고 및 공표

- 근 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 기 : 2021. 2.
- 대 상 : 상주시, 상주시의회, 시민
- 방 법 : 보고서 제작(250부), 상주시 홈페이지 게재, 언론 홍보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 정기회의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기별 개최
 - 1차 정기회의 : 3. 18(목) 서울 프레스센터
 - 2차 정기회의 : 12. 1(수) 정부세종청사
- 참 석 : 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 내 용 : 임원 선출, 권익위원회(고충처리) 주요 정책·제도소개, 고충처리에 관한 의견교환 및 발전방안 등 토의



1차 전국협의회(서울)



2차 전국협의회(세종)

음부즈맨 활성화 세미나 참석

- 일시 및 장소 : 9. 28(화) 14:00~ 울산광역시(의회 의사당)
- 참석 : 국민권익위원회, 경상권 지자체 음부즈맨
- 내용 : 시민고충위원회(음부즈맨) 운영사례 발표, 발전방안 논의



음부즈맨 홍보 및 활동



상주농업대학생 홍보(농업기술센터)



민원 접수 및 상담



고충민원 관계자 협의



현장 확인

현장 의견수렴

II 음부즈맨제도 홍보

상주소식지(굿모닝 상주) 게재

2021년 3월호



2021년 9월호



SNS 홍보



공직자·이동장을 통한 홍보

○ 2021. 3월(홍보자료 활용)



홍보물 · 배너 활용



시청사(현관) 안내대



민원실 홍보대



배너 설치

리플릿 홍보

상주시 옴부즈맨과 상담하세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해드립니다!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생활불편 해소

상주시 옴부즈맨

상주시 옴부즈맨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민원
-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무처리 포함)으로 인한 민원
-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원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어겠습니다 ”

옴부즈맨 소개

옴부즈맨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행하는 의미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불리며 대한 시민의 고통을 접수하여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비사법적 사인장)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운영

- 옴부즈맨 1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 임명근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옴부즈맨은 시 직제와 별개로 직무유 독립적으로 수행



고충민원 해결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무처리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신청
시민은 누구나 상주시 옴부즈맨실을 방문하여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 무 실 : 상주시청 본관 3층
- 전화번호 : 054) 537-7684, 7685
- 팩 스 : 054) 537-6768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10:00 - 18:00

행정구제 제도와의 비교

구분	옴부즈맨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법외 위법·부당한 소극적 행정 처분(사실행위 및 무처리 포함) 또는 행정 기관의 경우 권익구제	법정이 정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기간	제한없음	제외(소송권 발생 시 60일 이내 제기 가능)	제외(소송권 발생 시 60일 이내 제기 가능)
절차	법외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및 무처리 포함) 또는 행정 기관의 경우	법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절단권	민간 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민간 소송
비용	무료	행정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소액에 한하여 무료

- 옴부즈맨의 기능**
- 시민권익 구제 기능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생활불편을 위한 조정·중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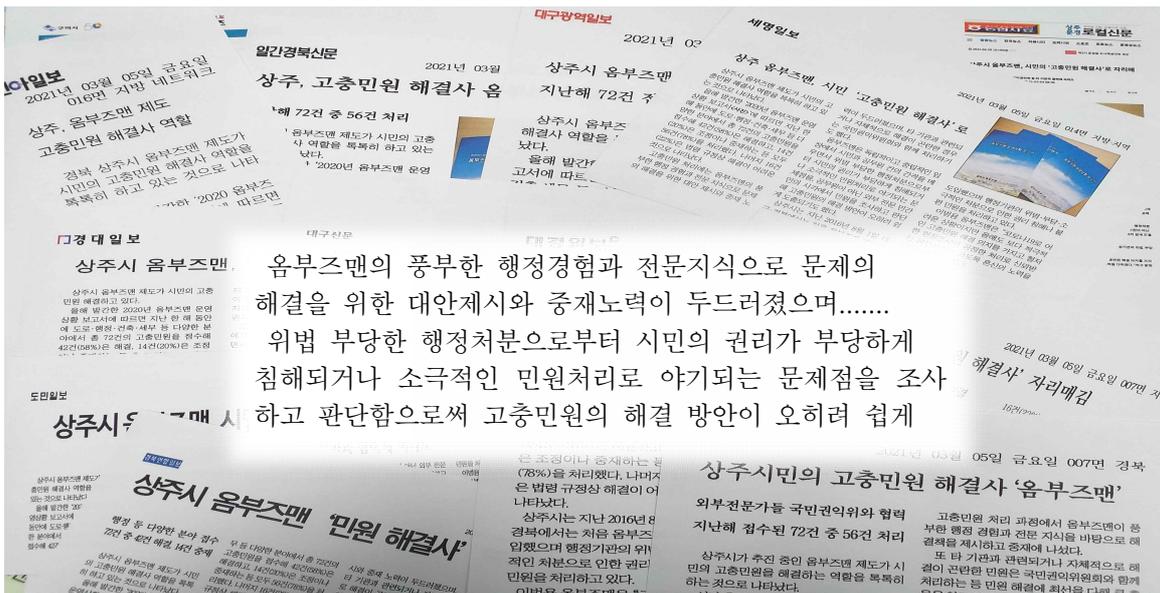
상주시 옴부즈맨이 함께 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상주시 옴부즈맨으로 연락주세요!

상주시 옴부즈맨실

대표전화 : 054) 537-7684, 7685
팩 스 : 054) 537-6768
경상북도 상주시 삼천로 233 상주시청 본관 3층

상주시
Seoul Citizen Ombudsman



대구일보 2021년 03월 05일 007면 경북

상주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읍부즈맨'

외부전문가들 국민권익위와 협력
지난해 접수된 72건 중 56건 처리

상주시가 추진 중인 읍부즈맨 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발간한 '2020년 읍부즈맨 운영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42건(58%)을 해결하고, 14건(20%)은 조정·중재해 56건(78%)을 처리했다. 나머지 16건(22%)은 법령 규정상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었다.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읍부즈맨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재에 나섰다. 또 타 기관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읍부즈맨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간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한 덕분에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쉽게 도출되기도 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북연합일보

2021년 03월 05일 008면 경북

상주시 읍부즈맨 '민원 해결사' 역할 톡톡

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접수
72건 중 42건 해결, 14건 중재

상주시 읍부즈맨 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간한 '2020년 읍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 동안에 도로·행정·건축·세

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42건(58%)은 해결하고, 14건(20%)은 조정이나 중재하는 등 모두 56건(78%)을 처리했다. 나머지 16건(22%)은 법령 규정상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 처리에는 읍부즈맨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제

시와 중재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타 기관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하기도 했다. 읍부즈맨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간격을 메우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써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오히려 쉽게 도출되기도 했다. 상주시는 2016년 8월 1일 대구·경북에서는 처음 읍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나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인터넷 신문



● 시정 뉴스



● 포토 뉴스



2020년도 상주시 음부즈맨 운영상황보고서 발간(2021.02.18.)

● 상주시 홍보영상



● 운영상황보고서 공개

작성자	사호동	등록일	2021-02-26 11:24:47	조회수	53
첨부파일	소	2020년 음부즈맨 운영성과 보고서.pdf [미리보기]			

2020년 상주시 음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부 록

- I.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II.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II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02)

(제정) 2015.10.02 조례 제10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고충민원”이란 상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2.“민원인”이란 시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맨 기능·구성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시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맨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맨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기능) ① 읍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2. 읍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읍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읍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읍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제5조(직무 관할) 읍부즈맨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제6조(읍부즈맨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읍부즈맨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읍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읍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맨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은 옴부즈맨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가옴부즈맨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수탁기관의 장은 옴부즈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맨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맨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맨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맨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옴부즈맨로부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단체장은 옴부즈맨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읍부즈맨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① 읍부즈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읍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읍부즈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지원) 시장은 읍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14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01. 01)

(제정) 2016.02.29 규칙 제5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옴부즈맨(이하"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 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옴부즈맨의 구성을 위하여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1. 부시장, 인사업무담당국장
2. 상주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 학교장(초·중·고),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 3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맨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읍부즈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읍부즈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조사 실시의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관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조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처리 지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읍부즈맨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맨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부즈맨은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휴대 등) 읍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합의의 권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 후 읍부즈맨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 권고(의견표명)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제15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8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읍부즈맨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읍부즈맨은 해당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결과와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른 처리결과와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7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읍부즈맨은 조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인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읍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의 공표는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는 공보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두고 사무의 운용은 읍부즈맨이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는 2명 이내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읍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0조(경비)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읍부즈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읍부즈맨의 보수
2.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금액)
3. 급량비(급식비)
4. 그 밖에 읍부즈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읍부즈맨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부즈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4대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중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2.30.>]

제21조(공인의 사용) ① 읍부즈맨이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새겨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부즈맨 공인의 사용은 「상주시 공인 조례」 및 「상주시 공인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2.30.>]

[중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0.>]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읍부즈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12.30.>]

부 칙 <규칙 제543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41호,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시행 2021. 01. 01)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결과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상주시 옴부즈맨이
함께합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대표전화 : 054)537-7684, 7685

팩 스 : 054)537-6168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3층)

상주시 음부즈맨이
함께합니다!

상주시 음부즈맨

대표전화 : 054) 537-7684, 7685

팩 스 : 054) 537-6168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3층)